

憲特 憲法改正主要論議事項

1987. 7. 13

憲法特別委員會

# 憲特 憲法改正 主要論議事項

## I. 前文

- 上海臨時政府의 法統性만 認定하기로 함
  - 大韓國民은 己未三一運動으로 大韓民國을 建立하여
- 5.18 精神, 抵抗權 宣言, 國軍의 政治介入 禁止 宣言은 認定하지 아니하기로 함

## II. 總綱

- 違憲政黨 解散 判決 裁閱은 大法院으로 함

## III. 基本權

### 1. 保安處分

- 現行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부정한 것을 刑의 宣告에 의해서 하도록 함
  - 人權伸張 측면에서 法院의 判決에 의하도록 함

### 2. 屋内外集會規制問題

- 現行으로 憲法에서 集會·結社의 自由만 認定 法律에서 處理하도록 言及은 回避함.

### 3. 選考年齡

- 現行 20歲를 固守하되, 對抗論理를 잘 싸우도록 함.
- 一部 18歲 主張도 있음

#### 4. 軍人등에 대한 國家賠償基準

- 現行 二重賠償禁止에서 이미 받은 補償額을 基點 差額만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게 合理的으로 調整함.

#### 5. 團體行動權에 대한 制限削除

- 國家·防衛產禁體등에 宗事하는 勸勞者의 團體行動權을 制限하는 條項을 削除함. ③
  - 이를 削除하여도 第31條 第1項 但書에 團體行動權의 行使는 法律로 定하도록 하여 이를 削除하여도 무방함
- 第1項 但書도 삭제하고 一般 留保條項으로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었음.

#### 6. 財產權의 收用등에 따른 補償은 法律이 定하는 外에 따라 正當한 補償을 支給하도록 함.

- #### 7. 任意同行禁止規定은 挿入하지 아니하도록 함
- 現行 憲法도 令狀없이 체포·구금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.

任意同行은 事實의 概念임

#### 8. 特別檢事制度는 否認定

#### 9. 言論의 自由는 전폭적으로 受容하도록 함.

## IV. 權力構造

1. 副統領制는 認定하지 아니하도록 함

2. 大統領候補資格要件

◦ 現行의 「계속하여 5年以上 國內居住」를 維持하되  
主張에서는 言及하지 아니하도록 함

◦ 政黨推薦制는 認定하지 아니하도록 함

3. 大統領의 任期・重任制限

◦ 6年 單任案을 主張하되, 4年 1次 重任이 有利한은  
主張함.

4. 重要政策에 대한 一般國民投票制는 現行을 維持함.

5. 大統領의 非常措置權

◦ 主張項目에서는 除外하고 第3共和國의 緊急命令.  
緊急財政經濟命令으로 昇格하도록 함

6. 大統領의 國會解散權

◦ 削除하도록 하는 것이 多數意見인  
- 三權分立의 原則

7. 大統領의 諮問機關인 國家安全保障會議, 國政  
諮問會議, 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는 現行대로  
維持함

8. 國務會議는 現行대로 審議機關으로 함

1. 国会臨時會召集要求는 現行 在籍議員 3분의1에서  
4분의1로 緩和하도록 함

10. 年間 国会會期期限 削除.

◦ 現行 年間 150日 이상 초과 못하도록 한 規定을 削除하고  
필요하면 国会法에서 規定하도록 함

11. 國政監査權

◦ 國政監査權을 認定하되 國政監査의 對象·範圍·  
절차를 法律로 定하도록 하여 法律에서 制限하도록 함  
- 國民의 批靚을 피하여 소기의 目的 達成

◦ 과거의 國政監査權의 폐해를 들어 강력 反對하는  
主張도 있었음.

12. 國務總理·國務委員의 解任 連任權을 認定  
- 解任 連任이 なければ 大統領은 特別한 事由가  
없으면 이어 응하도록 함

13. 大法院長·大法官의 選任方法

◦ 法官推薦會 設치의 導入 主張이 多數意見임

14. 憲法委員會의 廢止 함

◦ 舊來 憲法委員會의 機能인 違憲政黨의 解散 判  
決은 大法院이 주고, 彈劾 審判 機能은 別途의  
彈劾 審判 委員會를 두어 수행하도록 함

## V. 經濟條項

- 從前案을 維持하되 勤勞者의 經營參加權問題는 基本權에서 하여 經濟條項에서 解決하는 方案을 講究하도록 할.

## VI. 地方自治

- 從前案대로 할

## VII. 憲法改正

- 現行의 改憲案發議權者인 大統領·國會在籍議員 過半數外에 國會議員 選舉權者 50萬이상 追加를 檢討할

## VIII. 附則

- 附則에서 重要한 事項은 國會議員의 選舉에 관한 事項인바 이는 政治日程이 따라 規定하도록 할